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8.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0. 11. 16

다. 상정일자 : 2000. 11. 16

(제8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제89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나. 제정사유

◦ '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 시설의 설치가 규제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을 줄이고 수질 오염이나 자연경관등을 감안하여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이 2000. 5. 4 신설됨에 따라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의 범위를 규정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 홍수 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단.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집단화된(10호이상)취락의 지역내에 지목이 대지. 나대지에 한한다.

- 기타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제한을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적용하여 문화재 보호및 지역개발 기타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한할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농림 지역내 개발과 보존의 견해차로 행위허용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2000. 5.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 제4조의 3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설치 허용 범위를 정함.
-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토록 하는 특례 조항의 철저한 판단과 운영이 요구됨.
-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지속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참조

7. 첨 부 :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을 “화순군준농지역내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한다.

제1조 “위락·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등”으로 한다.

제2조 “위락·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등”으로 하고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 지역등)”을 “(위락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등)”으로 하고 “위락·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등”으로 하며 제1호 아목을 삭제한다.

제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제한특례)”을 “(위락시설등의 설치제한특례)”로 한다.

제5조 “위락·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위락·숙박시설등 제한적 설치허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위락시설등</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u>위락·숙박시설등</u>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②~④ 생략	제2조(정의) ----- ----- ①“ <u>위락시설등</u> ” ----- -----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②~④ (현행과 같음)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에서 <u>위락·숙박시설등</u> 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 사 생략 아. 도로법에 이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생략	제3조 (위락시설등의 ----- -----) ----- <u>위락시설등</u> ----- ----- ----- 1.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특례) 생략	제4조(위락시설등의 -----)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농림지역내에 서의 <u>위락·숙박시설등</u> 을 영위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건축허가(용도 변경을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법령과의관계) - - - - - - - - <u>위락시설등</u> -